

15.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도시주택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1일
- 심 사
 - 대구광역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
 -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6. 21)상정, 심사유보.
 -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7. 6)상정, 수정안 가결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정함(안 제2조).
 -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
 - 혁신도시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
 -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심의
 -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
- 나.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함(안 제3조).
 - 대구광역시, 건설교통부, 동구청관계공무원
 -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에 속한 자
 -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
- 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라.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.

3. 근거법령

- 가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
- 나. 「동법 시행령」 제32조

4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도시주택본부장 정명섭)

- 먼저 제정목적을 말씀 드리면
 -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위원회 기능으로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, 혁신도시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,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,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,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,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(안 제2조)
 -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, 위원의 자격은 대구광역시, 건설교통부 및 동구청 관계공무원,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에 속한 자,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고(안 제3조)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(안 제4조)
 -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인 위원장이 진행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토록 하였고(안 제6조)
 -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서면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(안 제7조)
 - 실무협의회를 둬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(안 제8조)

-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의뢰, 자료,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(안 제10조)
-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음. (안 제11조)

5. 검토보고 요지(보고 : 전문위원 하재열)

□ 본 조례안은

○ 2007. 2. 12제정된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

○ 입법예고(2007. 4. 20~5. 10) 및 조례·규칙심의위원회(2007. 6. 5)의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것이며,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원(동구 아양로 373 강대식)이 혁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” 요구하였으나, 이는 상위법령인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1조 제4항에 의한 위촉 또는 임명대상에 부합되지 않아 본 의견을 미반영한 것으로 보여짐.

□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○ 안 제2조(기능)에서, 위원회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, 혁신도시의 산업·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,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,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3조(구성) 및 안 제4조(임기)에서

·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대구광역시·건설교통부·동구청 관계공무원,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에 속한 자,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하고,

·위원회는 위원장이 되는 시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환경분야, 녹지·공원분야 전문가 등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부문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위촉위원의 임기의 경우는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짐.

또한, 위원의 해촉(안 제4조 제2항) 뿐만 아니라 위촉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하여도 위원의 공개모집이나 회의의 고지 등 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안 제6조(회의)에서,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회의소집의 경우 위원장이 2명(대구광역시장 및 외부위원장)이 각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하겠음.

○ 안 제7조(서면심의)에서,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 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자칫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몇몇 사람의 의중에 따라 형식적 의사결정이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

○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12개 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자족형 도시의 건설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

이견은 없다 하겠으며,

○ 다만, 동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(안 제8조)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고,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구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6. 21)

질	의	답	변
○ 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?		○ 이전공공기관 3개 기능군에서 참여하고 대학, 건교부 동구청 등 지역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예정임.	
○ 이전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고, 노조도 참여하는 것은 지역발전 보다는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한 명목으로만 보임. 대학, 연구기관, 전문가의 구성을 늘리는 등 구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, 중요한 사안을 서면 심의토록 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.		○ 초기단계는 의견을 모아야 하므로 가급적 소집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음.	
○ 간단한 회의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는지?		○ 운영을 가급적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음.	
○ 위원구성에 있어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늘려 발전적 방향 제시가 가능토록 해야 하겠음.		○ 예, 잘 하겠음.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음.	
○ 이전기관의 노조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유는?		○ 이전기관 노조에서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생각됨.	
○ 구의원 참여를 배제했는데 주민대변인은 구의원이 더 적합한 것 아닌지?		○ 시자체적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무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. 기타 주민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동구청을 통해 청취토록 하겠음.	
○ 실무위원회 운영방법은?		○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됨.	
○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는지?		○ 주로 관리와 이전기관의 요구사항 처리 등을 다루게 됨.	
○ 위원회 구성시 환경·교통관련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음.		○ 예, 잘 검토하겠음.	
○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혁신도시의 발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결정과 심의를 담당하는게 바람직한데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만을 심의한다면 본 위원회의 성격을 단순한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가 될 필요가 있고, 지역발전엔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음.		○ 예, 잘 알겠음.	

○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7. 6)

질 의	답 변
<p>○ 도시주택본부장 등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데 적합한 표기인지?</p> <p>○ 실무협의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담당하는 일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계획을 만드는 등 중요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지?</p> <p>○ 당초 실무위원회는 실무담당자로 이루어져 있었고, 소위원회는 전문가로 변경하면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.</p> <p>○ 당초에도 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를 삭제한다는 뜻인지?</p> <p>○ 본 조례와 혁신비즈니스센터와는 시행에 시차가 있으므로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으면 되는 것 아닌지?</p> <p>○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방향은?</p>	<p>○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임.</p> <p>○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임.</p> <p>○ 운영하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겠으며, 위원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운영세칙에 협의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겠음.</p> <p>○ 조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운영세칙에 정한다는 것임. 건교부지침에 혁신도시내에 혁신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실무협의회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.</p> <p>○ 예, 맞습니다.</p> <p>○ 실무협의회 구성, 운영할 시에는 운영세칙이 필요했으나 소위원회를 구성시에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. 조례안이 확정되면 운영시 필요사항에 대해 제정토록 하겠음.</p>

7. 토론요지

○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6. 21)

본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간 충분한 논의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심사를 유보함.

○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(2007. 7. 6)

심도있는 논의결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8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